日本의 大學 總·學長 선임과 추대방식

—明治大學을 中心으로—

張 龍 國
(檀國大 會計學科)

1. 序 言

大學은 研究·敎育의 사명을 지닌다. 양자 모두는 公共的 性格을 나타내며 學問의 傳授·創造와 등시에 研究 및 研究後繼者를 養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大學의 研究는 필연적으로 '研究의 研究'나 '研究者의 研究'를 요청받게 된다. 이러한 요청에 따라 大學은 교육의 人的 要素(교수, 학생 및 직원)와 物的 要素(실험·실습시설 및 기타 교육시설)를 갖추어야만 한다. 따라서 大學 운영자들은 교육의 인적 요소 확보와 물적 요소 확충을 목적으로 합리적인 운영은 물론 財政 確保를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대학 사회는 大學 나름대로의 競爭的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래에 와서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認識과 解決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에 놓여 있다. 예컨대 입시제도, 교직원 인사규정, 교과과정의 개편 및 교육시설 확충, 재정확보, 총·학장 선임 등의 여러 문제가 大學敎育 전반에 걸친 行·財政상의 조치나 自己改革 없이는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여러 가지 문제점 중 입시 제도의 개선, 교직원의 인사 및 교과과정 개편 문제 등은 이미 조치를 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안이다. 또한 교육 시설의 확충 및 재정 확보에 있어서도 각계 또는 각 대학마다 自救策을 찾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大學 總·學長 選任方式의 문제는 현재의 私立學校法 규정대로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대학 사회에 제시되고 있는 總·學長 選任方式에 대하여 選任機構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그 기구의 構成員에 대한 選任方法을 살펴 보고, 規程에 명시된 '制度上 選任方式'을 日本 明治大學의 경우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制度的 選任方式' 이외에 筆者가 다년간 明治大學에서 연구하면서 느꼈던 선임 방식——규정에 의한 '制度的 選任方式'이면서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 온 推戴方式——을 설명하고자 한다.

2. 總·學長 選任機構와 그 構成

1) 理事會

日本 明治大學의 경우 정관에서 우선적으로 총장의 地位 및 權限에 대하여 大學敎育을 총괄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장은 評議員會에서 선임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총장으로 선임되면 當然職理事가 된다. 선임된 이사 중에서 理事長을 선임하며, 선임된 이사로서 理事會를 구성한다.

이사회는 理事 定數의 과반수가 출석하여야만 개최할 수 있으며, 議事의 결정은 출석 이사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정한다. 단, 평의원회에 附議하여야 할 사항, 사무 분담에 관한 사항, 이사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 정수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사회에는 監査 3인을 둘 수 있다.

2) 評議員會

평의원회는 敎員·職員 중에서 선임된 25인, 學識과 社會經驗이 많은 인사 중에서 선임된 20인, 同門 중에서 선임된 25인으로 구성한다. 평의원은 評議員銓衡委員會에서 선임한다.

평의원회의 소집은 이사장이 하며, 평의원회의 互選에 의하여 의장 및 부의장을 선출한다. 평의원회는 평의원의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야만 개최할 수 있으며,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평의원회의 운영을 원만히 하고 그 職責을 완료하기 위하여 평의원회 내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常設委員會와 臨時委員會로 한다. 상설위원회는 2部會로 구분할 수 있다. 임시위원회는 평의원회가 필요로 할 경우에 설치한다.

상설위원회의 직무는 평의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평의원회로부터 위탁된 사항, 이사 또는 감사에 대해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을 행한다. 임시위원회의 직무는 설치할 때마다 평의원회에서 결정한다. 상설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위원장 1인, 제1부회 7인, 제2부회 7인으로 한다. 각 부회에 부장 및 간사 각 1인을 둔다. 상설위원의 선임은 이사와 감사가 아닌 평의원 중에서 銓衡委員會가 전형한다. 임시위원은 평의원회에서 호선한다.

3) 顧問

顧問은 평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들이 선임한다. 고문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에 응하며, 평의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할 수 있다.

4) 銓衡委員會

① 總長銓衡委員會

총장을 선임할 때에 우선 총장전형위원회에서 총장 후보자를 전형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평의원회가 선출한 교원이 아닌 評議員과 교수회에서 선출한 專任 이상의 敎員, 이사장이 추천한 顧問으로 구성한다. 전형위원이 결정되면 이사장은 즉시 銓衡委員會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위원회는 평의원에서 선출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한다.

② 評議員銓衡委員會

평의원전형위원은 이사장의 위촉에 의해 이사 및 감사의 호선에 의한 자, 고문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 자, 교수회에서 선임한 전임 이상의 교수, 직원회에서 선임하는 參事 이상의 직원, 평의원의 호선에 의한 자, 동문 중에서 선임된 자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現 평의원의 임기 만료 1개월 전에 評議員銓衡委員會를 소집한다. 이 위원회는 전형위원의 호선에 의해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 및 간사 2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규칙에 정해진 직무 수행 이외에 銓衡委員會의 의장이 되며, 평의원 선임에 관한 사무를 통괄한다.

3. 總·學長 및 評議員의 選任方式

1) 總·學長 銓衡委員의 選任과 總·學長 選任方式

총·학장을 선임할 때에는 먼저 전형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전형하여야 한다. 전형위원회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 교원이 아닌 평의원, 교수회에서 선출한 전임 이상의 교원, 그리고 이사장이 추천한 고문으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평의원회 및 교수회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전형위원의 선출을 요청한다. 선출방법은 單記無記名 투표로 하고, 득표순으로 당선자를 정한다. 동수일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총장 후보자의 전형은 위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후보자를 결정하였을 때 위원장은 즉시 평의원회 의장에게 후보자의 姓名을 보고하여야 한다. 평의원회는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된 후보자에 대해 총장을 선임한다. 이

때 선임 의결은 평의원 2/3 이상이 출석한 평의원회에서 출석 2/3 이상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이 절차에 의해 총장이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평의원회 의장은 위원회에 다른 후보자의 전형을 구하여야 한다. 이 후보자도 평의원회에서 총장으로 선임되지 않았을 때에는 다시 위원회에 후보자의 전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는 한번 전형된 후보자를 재차 전형할 수 없다. 세번째 후보자에 대해서 평의원회는 2/3 이상 출석한 평의원 과반수의 의결에 의하여 총장을 선임한다.

2) 評議員銓衡委員의 選任과 評議員 選任方式

평의원의 선임은 평의원전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전형위원은 이사장의 위촉에 의하여 이사 및 감사의 호선에 의한 자, 고문 중에서 이사장이 지명한 자, 교수회에서 선임된 교수, 직원 중에서 선임된 직원, 평의회의 호선에 의한 자, 동문 중에서 선임된 자로 구성한다. 여기에서 被選任 자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교원인 평의원의 피선임 자격은 5년 이상 재직한 교원이어야 하며, 직원인 평의원의 피선임 자격은 참사급(과장급) 이상이어야 한다. 동문 평의원의 피선임 자격은 최종대학 졸업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동문으로서 동문회의 이사회 임원이어야 하며, 재직 동문일 경우는 제외된다.

이사장은 교수, 직원 및 동문의 區別에 따라 평의원 피선임 자격자 명부를 작성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피선임 자격자 명부는 전형위원회 소집 전 1월 현재로 그 소집하는 날로부터 15일 전에 작성하여야 하며, 명부 공개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한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전형위원회는 ①전형위원이 추천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5년 이상 재직중인 교원, ③참사 이상의 직원, ④동문회의 이사회 임원 중에서 평의원을 선임한다. 전형위원회는 2/3 이상의 출석이 없으면 개최할 수 없다. 평의원의 선임은 위에서 확정한 피선임 자격자 명부에 등록된 자에 한하며, 피선임 자격자 각각에 대해 전형위원회 출석 위원 2/3 이상의 동의를 얻어 행한다. 단, 2회에 걸쳐 2/3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을 때는 과반수 동의로 이를 결정할 수 있다.

4. 日本 大學의 總·學長 推戴方式

지금까지 총·학장 선임 방식에 대하여 현재 日本 明治大學에서 실시되고 있는 방식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制度上의 選任方式'에 대하여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총·학장 선임에 있어서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構成員들의 參與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즉, 理事會, 顧問' 敎授會, 職員會, 同門理事會 任員, 그리고 學識이 풍부하고 社會經驗이 많은 人事들을 구성원으로 참여시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총·학장 선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평의원회를 구성한 후, 여기에서 총·학장 전형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다음에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 총·학장 전형위원과 교수회에서 선출한 전임 이상의 교원(5년 이상 재직한 교원) 및 이사장이 추천하는 고문으로 총·학장전형위원회를 구성한 후, 후보자를 전형하여 이를 결정한다.

전형위원회에서 결정된 후보자에 대해 평의원회는 선임 의결을 거쳐 총·학장을 선임하게 된다. 이러한 방식이 規程上에 주어져 있는 '制度的인 選任方式'이다. 그러나 제도상의 방식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學識이 풍부하고 社會的으로 덕망이 높은 자로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학교의 운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를 추대하고자 하는 '推戴方式'이라는 것이다.

100여 년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大學에서 이러한 '추대방식'을 택하기까지에는 많은 장·단점을 고려하였으리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총·학장의 선임을 구성원의 직접 참여에 의한다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즉, 직접 선거에 의한 시간 소모와 재정 낭비, 학연·지연 등의 많은 분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선임 후에도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지 못함은 물론 행·재정상의 모순을 해결하는 데도 많은 어려움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明治大學 이외에도 일본 대학들은 대부분 총·학장 선임에 있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推戴하여 대학 발전에 기여하게 하는 '추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